

제출인	① 사업장명	② 종 류	종
	③ 대 표 자		
	④ 주 소	(전화번호:)	
⑤ 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

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

⑧ 확정배출량산정

“물환경보전법 시행령”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()년도 ()반기의
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.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1.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1부
2.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3.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(공동방지사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) 1부

※ 작성요령

1.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.
2.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3. ⑥의 "배출농도" 및 "일일유량"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.
4. ⑥의 "수질오염물질 배출량"은 "배출농도"에 "일일유량"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5. ⑦의 "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"란에는 ⑥의 "평균"란의 수치를 적습니다.
6. ⑦의 "검사결과에 따른 산출"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.
7. ⑦의 "평균"은 "검사결과에 따른 산출"란의 각각의 수치와 "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"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8. ⑦의 "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"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"평균"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
9. ⑦의 "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"은 "평균"란의 "수질오염물질 배출량"에서 "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"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.
10. ⑧의 "유기물질"란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 중 ⑦의 "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"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의 배출량을 적습니다. 다만,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하며, 2020년 1월 1일 전에 「하수도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를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한다.